제96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안 (산림청)	1.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기준(신설) ○ 산불예방 및 벌쏘임 사고 방지를 위해 민가와의 이격거리,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산불방지계획 반영 등 법령에서 위임받은 보전국유림 내 벌통 등 설치기준을 정함 ▶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	1.비중요
2	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항공종사자의 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의무(신설) ○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가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로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 방법, 신고 이후 항공전문의사가 소견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,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신고 접수·처리 및 결과통지에 관한 절차 등 신설 ▶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의3 2.신체적·정신적 상태 저하 미신고 시 처분기준(신설) ○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가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, 신고 이후 결과를 통지받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격증명 효력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▶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의3	
3	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소방청)	1.재실자밀도를 통한 피난안전구역 산정(신설) ㅇ 초고층재난관리법상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▶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, 제5조 2.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(강화) ㅇ 현행 법령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용도변경시에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모든 초고층 건축물 등이 매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ㅇ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변경 또는 사용승인으로부터 30일 이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, ㅇ 신축 및 용도변경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▶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	1.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특별법 시행령 제12조, 제13조 3.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여부 확인(신설) ㅇ 현행 법령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관련된 사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▶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4.총괄재난관리자의 직무대행자(신설) ㅇ 2024. 2. 13. 개정 공포된 개정법률에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 · 질병 등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 ㅇ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, 대리자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▶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(소방청)	1.재실자밀도를 통한 피난안전구역 산정(신설) ㅇ 초고층재난관리법상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▶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2.조치명령의 이행기간(신설) ㅇ 2024.2.13. 개정 공포된 개정법률에서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,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함 ㅇ 조치명령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치명령시 원칙적 이행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, 행정기관이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▶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	1.중요 2.비중요
5	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교육부)	1.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기간(신설) ㅇ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·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교법인, 공인법인 소유의 재산을 임차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임차기간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▶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	
6	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외의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출서류(신설) ㅇ 임상시험 등 기관 또는 임상시험 등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상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4조, 제17조 2.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의 준수사항 등(신설) ㅇ 디지털의료기기 공급 설치 장소 확인, 결함, 오류 발생 시 안전조치 실시 및 적법한 데이터의 사용,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판매·임대 대상 한정 등 제조·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4조 3.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기준(신설) ㅇ 디지털의료기기 우수관리체계 인증 취소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7조, 별표2	1.비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및 표시·첨부 방법(신설) ○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 시 표시·첨부하여야 하는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기재방식을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구체화함 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9조 5.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등의 기준(신설) ○ 디지털의료기기제조 수입업자가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·조사를 통해 미흡한 경우 적합판정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함 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0조, 별표3 6.행정처분 기준(신설) ○ 디지털의료제품 제조·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및 관련 법령 위반 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2조, 별표4 7.심사결과 공개 방법(신설) ○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하여 허가·인증을 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또는 검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공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3조	